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9. 1.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79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5. 9. 1.)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강남관광정보센터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변경·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조항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정보센터의 명칭 및 기능 정비(안 제8조~제13조)
-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 재배치 등 정비 및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조문 신설(안 제18조~제28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6조의2)
- 법령 인용 방식 통일 등 기타 조문 일괄 정비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7. 11. ~ 2025. 7. 31.) 결과

-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현행안 유지

- 제8조 신설된 제1호~제3호 삭제

- 제14조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원”을 “일대”로 변경

- 제23조제2항 “심의회”를 “위원회”로 변경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I. 개요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안은 강남관광정보센터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그 명칭과 기능이 변경·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조례상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참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0호)이 금번 회기 본 개정안과 함께 제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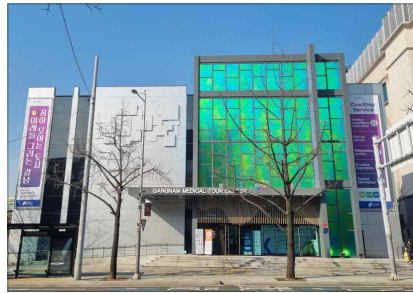
## II. 주요 내용 검토

□ 강남관광정보센터의 명칭 및 기능 정비(안 제4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강남관광정보센터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2013. 6. 26. 압구정로 161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2023. 6. 22. 시설 리뉴얼을 통해 의료관광 종합 안내센터인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재개관하게 됨.

###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경과]

- 위 치: 강남구 압구정로 161
- 규 모: 지상2층, 연면적 820㎡(248평)
-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가설건축물
- 재산관리관: 건물(관광진흥과)/토지(교통행정과)
- 운영현황



운영연도 (운영기관)	운영용도
2013. 6. 26. ~ 2014. 4. 30. (서울관광마케팅)	○ 종합관광 안내센터 및 한류 체험관
2014. 6. 1. ~ 2019. 5. 31. (강남문화재단)	
2021. 4. 5. ~ 2021. 10. 31. (강남구 보건소)	○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2023. 6. 22. ~ 현재 (강남구 관광진흥과)	○ 메디컬투어센터

(자료: 관광진흥과)

- 그런데 2023년 6월 의료관광에 특화된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시설을 재개관하게 되면서 사실상 강남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한 사항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아래 표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관련]

주요감사 분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
관광정보센터와 메디컬투어센터의 역할 혼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정보센터와 메디컬투어센터의 역할 혼재 문제</li> <li>- 관광정보센터 기능을 메디컬투어센터가 대신 수행중에 있으며, 네이버 및 구글 내 관광정보센터의 잘못된 정보 노출로 방문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관광정보센터에 대해 네이버 및 구글 등의 검색 사이트에 정정 요구하여 관련 정보 삭제 또는 운영 정지로 안내하고 있으며</li> <li>○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운영 및 안내하고 있음</li> </ul>

-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설 운영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강남관광정보센터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위치 규정(제9조)은 삭제하였고, 임의 규정인 시설 설치 근거 규정은 남겨두되 시설명을 ‘관광정보센터’에서 ‘관광안내시설’로 변경하였으며(안 제8조), 시설의 기능에서도 의료관광 분야는 삭제함(안 제11조). 이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종합적 관광 안내 기능을 하는 시설 설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시설명 변경은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정책 판단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시설 운영 방향은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시설과의 관계라든가 정책 근거인 자치법규 정비에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보임. 조례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적시에 정비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주민 불편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바 향후 정책 변경 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조례 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법령 인용 사항 등 정비

- 안 제1조(목적)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에 낫표(「」)를 추가한 것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인용 시 제명임을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두어야 하나 그동안 누락된 상태였으므로 개정 사항은 타당함.

- 안 제16조의2(특례)는 상위법령 인용 사항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 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0. 6. 2.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위치 변경이 있었음(「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0조의3).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관심이 요구됨.

□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18조,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 안 제18조,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 사항은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23조)하고, 입안 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문 위치를 재정비한 것임. 개정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 임기 등 실체적 사항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과조치 등 부칙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3조에서는 제1항 제척, 제2항 기피, 제3항 회피 순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 순서 및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조 제목을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그 밖의 사항

- 안 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의 개정 사항은 현행 조례상의 표현을 다소 정비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은 동일함. 다만, 기왕 개정하려는 것이라면 “대외적 표시” 라는 표현보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관련 고시에서 사용하는 “관광특구의 명칭” 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는바(붙임 자료 참고), 이에 대한 수정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수정 의견은 아래 표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	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법 제	제14조(관광특구의 명칭 및 위치) 법 제70조에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원으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역(이하 “관광특구”라 한다)은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대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고,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한다.	따른 강남구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의 명칭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 Ⅲ. 종합 의견

□ 본 건은 변경된 시설 운영 사항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 다만, 시설 운영 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임.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가 적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79호

제안일자 : 2025.9.1.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 1. 수정이유

- 명칭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수정 및 정비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고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여 수정(안 제14조)
-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조 제목의 규정 순서 변경(안 제2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광특구의 명칭 및 위치) 법 제70조에 따른 강남구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의 명칭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안 제23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원으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역(이하 “관광특구”라 한다)은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대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고,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한다.</p> <p>제23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 ③ (생략)</p>	<p>제14조(관광특구의 명칭 및 위치) 법 제70조에 따른 강남구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의 명칭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한다.</p> <p>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p>

## 강남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을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에”를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를 ““강남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구”를 “강남구”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광정보센터 설치 등)”을 “(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남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을 “관광안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센터의 기능)”을 “(시설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 및 관광 홍보·안내”를 “관광안내·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수집·관리”를 “수집,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한류 문화행사, 한류 전시”를 “관광

· 문화 관련 행사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류”를 “관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시설”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센터”를 “시설”로 한다.

제13조 중 “센터”를 “시설”로,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앞은 사항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광특구의 명칭 및 위치) 법 제70조에 따른 강남구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의 명칭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를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영 제60조의3”으로 한다.

제18조 중 “구의”를 “구청장은 강남구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하며”를 “하고”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2조)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되”를 “하되,”로 한다.

제23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소위원회)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 제목 “(안건의 제출)”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6조)의 제목 “(의견의 청취 등)”을 “(의견의 청취)”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7조) 중 “구”를 “강남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u>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관광진흥법</u>」 제74조제2항-----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관광진흥법</u>」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 ----- 「<u>관광진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p>
<p>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p>	<p>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 ----- “<u>강남구</u>” ----- ----- -----.</p> <p>② ----- ----- ----- -----</p>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생략)

제4장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구청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로 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내·외국인을 위한 종합관광안내 및 홍보시설
2.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안내 시설
3. 한류전시 및 체험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

1. ~ 5. (현행과 같음)

6. ----- 강남구-----  
-----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장 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등) -

-----  
-----  
----- 관광안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  
-----.

<삭 제>

<삭 제>

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대상 의료 및 관광 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한류 문화행사, 한류 전시 및 체험장 운영 등 문화여가 기능
4. 한류 상품 개발,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생략)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
2. (생략)
- ②·③ (생략)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또는 사업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  
-----.

1. ----- 관광안내·홍보 -----
2. 국내외 ----- 수집, 관리 -----
3. 관광·문화 관련 행사 개최 -----
4. 관광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해지) ① ----- 시설 -----  
----- 각 호 -----  
-----  
-----.

1. 시설-----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  
----- 시설-----

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원으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이하 “관광특구 “라 한다)로 한다.

제15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제16조의2(특례) ① 「관광진흥

----- 알  
은 사항은 -----  
-----  
-----  
-----  
-----  
-----.

제14조(관광특구의 명칭 및 위치) 법 제70조에 따른 강남구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의 명칭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15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

제16조의2(특례) ① 법 제74조제2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18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항에 따라 영 제60조의3-----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강남구의 -----  
-----  
-----  
-----  
-----.

제20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복지생  
활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 3. (생략)

④ 삭제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제2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고 관리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  
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

③ 당연직 -----  
-----  
-----  
----- 하고-----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  
-----  
-----

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3조 (생략)

제2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

-- 하되, -----  
-----.  
-----  
-----  
-----.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신 설>

제26조(소위원회)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견의 청취 등) (생략)

제27조(의견의 청취) (현행과 같음)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

제28조(수당 등) -----  
----- 강  
납구 -----  
-----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삭 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9
----------	-----

제출연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관광진흥과

## 1. 제안이유

강남관광정보센터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변경·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조항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광정보센터의 명칭 및 기능 정비(안 제8조~제13조)
- 나.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 재배치 등 정비 및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조문 신설(안 제18조~제28조)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6조의2)
- 라. 법령 인용 방식 통일 등 기타 조문 일괄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7. 11. ~ 2025. 7. 31.) 결과

-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현행안 유지

- 제8조 신설된 제1호~제3호 삭제

- 제14조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원”을 “일대”로 변경

- 제23조제2항 “심의회”를 “위원회”로 변경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을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에”를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를 ““강남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구”를 “강남구”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광정보센터 설치 등)”을 “(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남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을 “관광안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센터의 기능)”을 “(시설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 및 관광 홍보·안내”를 “관광안내·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수집·관리”를 “수집,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한류 문화행사, 한류 전시”를 “관광·문화 관련 행사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류”를 “관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시설”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센터”를 “시설”로 한다.

제13조 중 “센터”를 “시설”로,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않은 사항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지역(이하 “관광특구”라 한다)은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대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고,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를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영 제60조의3”으로 한다.

제18조 중 “구의”를 “구청장은 강남구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하되,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하며”를 “하고”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2조)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

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되”를 “하되,”로 한다.

제23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소위원회)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 제목“(안건의 제출)”을“(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6조)의 제목 “(의견의 청취 등)”을 “(의견의 청취)”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7조) 중 “구”를 “강남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생략)

제4장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구청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로 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내·외국인을 위한 종합관광안내 및 홍보시설
2.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안내 시설
3. 한류전시 및 체험시설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강남구 -----  
-----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장 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등) -  
-----  
-----  
----- 관광안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

<삭 제>

<삭 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대상 의료 및 관광 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한류 문화행사, 한류 전시 및 체험장 운영 등 문화여가 기능
4. 한류 상품 개발,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생략)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
2. (생략)
- ②·③ (생략)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  
-----.

1. ----- 관광안내·홍보 -----  
-----
2. 국내외 -----  
수집, 관리 -----
3. 관광·문화 관련 행사 개최 -----  
-----
4. 관광 -----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해지) ① ----- 시설-----  
----- 각 호-----  
-----  
-----  
-----  
-----.

1. 시설-----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

에 따라 센터의 관리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원으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 시설-----

----- 않은 사항은 -----

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지역(이하 “관광특구”라 한다)은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 일대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고,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한다.

제15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생략)

<신설>

제2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

----- 하되, -----  
----- . -----  
-----  
-----  
-----  
-----  
-----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3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 ①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신 설>

<신 설>

<신 설>

제26조(의견의 청취 등) (생략)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제26조(소위원회)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의견의 청취) (현행과 같음)

제28조(수당 등) -----  
-----  
----- 강남구 -----  
-----  
-----  
-----

<삭 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 4. 작성자

-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주사보 송정현(02-3423-5533)